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준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8.

발 의 자 : 김준형 · 이재강 · 박은정
김영호 · 김재원 · 이기현
최혁진 · 최민희 · 서왕진
황운하 · 백선희 · 윤후덕
강경숙 · 허성무 · 박지원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·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중 “양성”을 “양성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문강사”를 “전문강사(이하 “통일교육 전문강사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·제3항”으로 한다.

③ 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전문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) ① (생략)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<u>전문강사</u>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.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9조의2(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전문강사(이하 “통일교육 전문강사”라 한다)</u>-----. ③ <u>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전문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</u> ④ <u>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 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</u> <u>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</u>

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	⑤ ----- -----제 2항·제3항----- ----- -----.
--	--